

대법원 2023. 8. 18 선고 2023다236672(본소), 2023다236689(반소) 판결 [계약금
반환청구 · 약정금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3. 8. 18 선고 2023다236672(본소), 2023다236689(반소) 판결
부산지방법원 2023. 5. 3 선고 2021나61970(본소), 2021나61987(반소) 판결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8. 31 선고 2020가소363685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상고인
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
담당변호사 이정환

피고(반소원고), 피상고인
주식회사 B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민삼, 유득열, 조희찬
판결 선고 2023. 8. 18.
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. 5. 3. 선고 2021나61970(본소), 2021나61987 (반소)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서경환, 대법관 김선수, 주 심 대법관 노태악, 대법관 오경미